

# 창북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 범위)** 개방 학교시설은 운동장, 다목적 강당, 일반교실, 특별교실, 주차장, 기타 학교 내 부대시설 등으로 한다.

**제3조(개방 시간)** ① 학교시설 개방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평 일	공휴일, 방학기간 등
운동장	06:00~07:30, 17:00~21:00	06:00~21:00
다목적 강당, 일반교실, 특별교실	미개방	08:30~16:30
주차장	전날 17:00~다음날 07:30	종일

②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은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이용 신청)** ① 학교시설 이용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거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이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 허가)** ① 학교장은 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이 직접 교육·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2. 전라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교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 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인 경우
  4. 지역주민 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인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순위의 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3개월 이상 장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④ 이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사용 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이용 허가의 취소)**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이용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 등을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경우
  9.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이용 허가기간 만료 후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이용허가가 취소된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별표1을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이 용 료(1시간당)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일반교실(1일기준)	1,000	4,000
특별교실(1일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다목적 강당	1,000	8,000
운동장	1,000	8,000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학교장은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회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비율 감면
3. 본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시 전원차단, 문단속, 청소 등 시설 이용에 따른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 등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별도 지정(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

⑤ 이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창북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 학교시설 개방시간

구 분	평 일	공휴일, 방학기간 등
운동장	06:00~07:30, 17:00~21:00	06:00~21:00
다목적 강당, 일반교실, 특별교실	미개방	08:30~16:30
주차장	전날 17:00~다음날 07:30	종일

### 학교시설 이용방법 및 절차



### 학교시설 사용료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이 용 료(1시간당)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외
일반교실(1일기준)	1,000	4,000
특별교실(1일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다목적 강당	1,000	8,000
운동장	1,000	8,000

### 학교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이용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 등을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작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경우
9.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